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652호 2020. 3. 2.(월)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54호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시행계획 고시 -----1
- 사천시 고시 제55호 향촌2 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 -----2

회 람										
--------	--	--	--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 652 호

사천시 고시 제2020- 54호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시행계획 고시

사천시에서 시행 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라 시행계획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2. .

사 천 시 장

1. 사 업 명 :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2. 위 치 : 사천읍 두량리 일원
곤명면 추천리, 본촌리, 정곡리 일원
3. 사업의 목적 : 노후 저수지 보수·보강을 통하여 농업용수 확보 및 농경지를 보호하여 영농 편의 제공
4. 사업의 내용 및 구역
 - 가. 사업의 내용
 - 저수지정비 4개소(웅곡저수지, 오사저수지, 원당골저수지, 곡내저수지)
 - 부대공사 1식
 - 나. 사업의 구역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두량리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추천리, 본촌리, 정곡리 일원
5. 사 업 비 : 1,150백만원
6. 사업기간 : 2020. 2. ~ 2021. 1.(12개월간)
7. 사업의 효과 : 저수지 용수확보 능력, 내구성 증대 및 재해예방
8. 사업시행자 : 경상남도 사천시장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해당없음
10. 관계도서의 비치 및 열람장소 : 사천시청 건설과(전화 055-831-3278)

사 천 시 공 보

제652호

사천시 고시 제2020 - 55호

향촌2 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

사천시 고시 제2018-251호(2018. 12. 13.)로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사천시 사등동 산34번지 앞 공유수면 일원의 향촌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고시합니다.

2020. 3. 2.

사 천 시 장

1. 산업단지 명칭(변경없음)

- 향촌2 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 사천시 관내 해안주변에 산재되어있는 소형 수리조선소 등으로 인하여 도시주거환경 저해 및 기름 유출로 인하여 해양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들 소규모 영세 수리조선소 등을 한 장소로 집단화하여 경쟁력 제고
- 지역경제 활성화, 해양환경 보존 등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구축 및 향후 사천 바다케이블카 운행 시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함과 동시에 한려수도 해상국립공원 주변 해양환경 보존 등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구축하고자 함.

사 천 시 공 보

제652호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경상남도 사천시 사등동 산34번지 앞 공유수면 일원

나. 면 적

A=68,661㎡(산업단지 : 62,153㎡, 진입도로 : 6,508㎡)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 방법(변경)

가. 개발기간

(기정) 2016. 7. 28. ~ 2020. 6. 30.

(변경) 2016. 7. 28. ~ 2020. 12. 31.

※ 변경사유 : 입주예정업체 입주 불확실성에 따라 서측호안 설계변경
지연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나. 개발방법 : 공영개발

5. 주요 유치업종(변경없음)

○ 유치업종 : 기타 기계 및 장비(C29), 기타운송장비 제조업(C31)

※ 폐수 발생시설 제외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가. 주 소 :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나. 사업시행자 : 사천시장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없음)

가. 지목별 현황 : 공유수면매립 예정지역으로 현재 지목이 부여되어 있지 않음.

나. 소유별 현황 : 공유수면매립 예정지역으로 현재 소유권 없음.

사 천 시 공 보

제 652 호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	구성비(%)	비 고
합 계		68,661	100.0	
산업시설용지		44,273	64.5	
공공시설용지		22,835	33.2	
	도 로	12,448	18.1	
	주 차 장	1,247	1.8	1개소
	공 원	1,456	2.1	1개소
	완 충 녹 지	351	0.5	
	경 관 녹 지	7,333	10.7	
기타시설용지		1,553	2.3	
	녹 지	1,553	2.3	

나. 기반시설계획

1) 도로계획

○ 총괄표(변경없음)

류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1	775	12,448	-	-	-	1	775	12,448	-	-	-
광로	-	-	-	-	-	-	-	-	-	-	-	-
대로	-	-	-	-	-	-	-	-	-	-	-	-
중로	1	775	12,448	-	-	-	1	775	12,448	-	-	-
소로	-	-	-	-	-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652호

○ 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중로	2	26	15~18	집산 도로	775	사등동 86-8	향촌2 산업단지 내	일반 도로	-	사천시 고시 제2016-159호 (16.07.28)	

2) 주차장계획(변경없음)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22	노외주차장	사등동 공유수면 일원	1,247	사천시 고시 제2016-159호 (16.07.28)	-

3) 녹지계획(변경없음)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2	녹지	경관 녹지	사등동 공유수면 일원	7,333	사천시 고시 제2016-159호 (16.07.28)	-
	19	녹지	완충 녹지	사등동 공유수면 일원	351	사천시 고시 제2016-159호 (16.07.28)	-

4) 공원계획(변경없음)

구분	도면표 시번호	공원 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3	공원	소공원	사등동 공유수면 일원	1,456	사천시 고시 제2016-159호 (16.07.28)	-

사 천 시 공 보

제 652 호

5) 상수도계획(변경없음)

○ 용수량

구 분	용 수 수 요 량 (m ³ /일)	비 고
계	153	· 용강배수지에서 공급
생활용수	21	
공업용수	132	

6) 오수처리계획(변경없음)

○ 오수량

구 분	오 수 량 (m ³ /일)	비 고
계	134	· 삼천포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
생활오수량	15	
공업오수량	119	

7) 에너지공급계획(변경없음)

○ 전 력

구 분	전력소요 (MWh/년)	비 고
계	4,033	· 한국전력공사(사천지사)와 협의하여 공급

○ 열수요

구 분	연간 열부하 (Gcal/년)	비 고
계	3,437	· (주)지에스이와 협의하여 공급

9) 통신공급계획(변경없음)

구분	소요회선	비고
산업시설용지	22	· (주)KT에서 신규 통신시설 공급
여유율(20%)적용	25	

사 천 시 공 보

제 652 호

9.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가. 총사업비 (27,400백만원)

(시비 및 지방채 발행 등) 사업시행자가 조달

나.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6년까지	2017년	2018년	비고
계	27,400	2,100	5,900	19,400	-
공 사 비	22,600	1,000	4,700	16,900	-
설계비	설계비	1,100	1,100	-	-
	감리비	1,200	-	1,200	-
기타비용	2,500	-	-	2,500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 해당없음

11. 에너지 사용계획 : 해당없음

12. 유치업종의 배치계획(변경없음)

구 분	업 종	면 적(m ²)	구성비(%)	비 고
계	-	44,273	100	-
C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4,273	100	폐수 발생시설 제외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3.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 : 해당사항 없음

사 천 시 공 보

제 652 호

14.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적 (㎡)	구성비(%)	비 고
합 계		68,661	100.0	-
처분대상 용지	소 계	44,273	64.5	-
	산업시설용지	44,273	64.5	실수요자 분양
지자체 무상귀속 시설용지	소 계	22,835	33.2	
	도 로	12,448	18.1	사천시 귀속
	주 차 장	1,247	1.8	"
	공 원	1,456	2.1	"
	완 총 녹 지	351	0.5	"
	경 관 녹 지	7,333	10.7	"
기 타	녹 지	1,553	2.3	"

15. 존치하려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 해당없음

16.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 : 해당없음

사 천 시 공 보

제 652 호

17.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각 호의 사항

I.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	비고
합 계		68,661	100.0	
도시 지역	일반공업지역	68,661	100.0	(99.8)
	자연녹지지역	-	0.0	(0.2)

나.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1) 교통시설(변경없음)

가) 도로

(1) 도로 총괄표(변경없음)

○ 총괄표

류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1	775	12,448	-	-	-	1	775	12,448	-	-	-
광로	-	-	-	-	-	-	-	-	-	-	-	-
대로	-	-	-	-	-	-	-	-	-	-	-	-
중로	1	775	12,448	-	-	-	1	775	12,448	-	-	-
소로	-	-	-	-	-	-	-	-	-	-	-	-

(2) 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중로	2	26	15~18	집산 도로	775	사등동 86-8	향촌2 산업단지 내	일반 도로	-	사천시 고시 제2016-159호 (16.07.28)	

사 천 시 공 보

제652호

나) 주차장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22	노외주차장	사등동 일원	1,247	사천시 고시 제2016-159호 (16.07.28)	-

2) 공간시설(변경없음)

가)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2	녹지	경관 녹지	사등동 공유수면 일원	7,333	사천시 고시 제2016-159호 (16.07.28)	-
	19	녹지	완충 녹지	사등동 공유수면일원	351	사천시 고시 제2016-159호 (16.07.28)	-

나)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3	공원	소공원	사등동 공유수면 일원	1,456	사천시 고시 제2016-159호 (16.07.28)	-

사 천 시 공 보

제 652 호

II.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6	향촌2 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천시 사등동 일원	68,661	2016.07.28 (사천시 고시 제2016-159호)	-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2) 토지이용계획 결정조서

구 분	면적 (㎡)	구성비(%)	비 고
합 계	68,661	100.0	
산업시설용지	44,273	64.5	
공공시설용지	22,835	33.2	
도 로	12,448	18.1	
주 차 장	1,247	1.8	1개소
공 원	1,456	2.1	1개소
완 충 녹 지	351	0.5	
경 관 녹 지	7,333	10.7	
기타시설용지	1,553	2.3	
녹 지	1,553	2.3	

사 천 시 공 보

제652호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17 - I -나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조서 참조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산업시설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 지			비 고
			번호	위 치	면적(m ²)	
계		44,273			44,273	
산업	산업1	44,273	1	사등동 공유수면 일원	11,116	
			2	사등동 공유수면 일원	17,642	
			3	사등동 공유수면 일원	6,445	
			4	사등동 공유수면 일원	9,070	

○ 주차장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 지			비 고
			번호	위 치	면적(m ²)	
계		1,247			1,247	
주	주1	1,247	-	사등동 일원	1,247	

사 천 시 공 보

제 652 호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산업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산업 산업 1-1~ 산업 1-4	산업 1-1~ 산업 1-4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공장 부대시설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배 치	· 건축배치지양구간에는 통경축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 배치 지양(권고)
		높이	최고한도	-
			최저한도	-
			색 채	· 주조색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계통 - 원색과 가까운 색 금지 ·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 주조색이 없고 보조색이 여러개 존재할 경우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 강조색 (제한없음)
			건축선	· 건축한계선 2m

사 천 시 공 보

제652호

나) 주차장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산업	산업 1-1~ 산업 1-4	용도	허용용도	· 주차장법 및 사천시 주차장조례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그 부대시설 - 주차전용건물일 경우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이고,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건축법 별표1에 따른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을 허용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최고한도	-
			최저한도	-
		색 채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건축한계선 2m	

6) 공원조성계획결정조서

(1) 공원 조성계획 총괄표

시설의 구분	부지면적 (㎡)	건축면적(㎡)	구성비 (%)	비고
총 계	1,456	-	100.00	
공원세부시설	266	-	18.26	
도 로	96	-	6.59	
광 장	113	-	7.76	
운동시설	57	-	3.91	
녹 지	1,190	-	81.74	

사 천 시 공 보

제652호

(2) 세부시설 조서

시설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건축면적(㎡)		규모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공 원 면 적				1,456	-	-	-	
시 설 합 계				266	-	-	-	
도로	소 계			96	-	-	-	
	1-1	보행자도로1	사등동 산37번지	53	-	-	-	
	1-2	보행자도로2	사등동 산37번지	43	-	-	-	
광장	소 계			133	-	-	-	
	2	중앙광장	사등동 산37번지	133	-	-	-	
운동 시설	소 계			57	-	-	-	
	3	체력단련시설	사등동 산37번지	57	-	-	2개	

(2) 녹지 조서

시설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건축면적(㎡)		규모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녹 지	소 계			1,190	-	-	-	
	4-1	녹지 1		685	-	-	-	
	4-2	녹지 2		505	-	-	-	

사 천 시 공 보

제 652 호

향촌2 일반산업단지계획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지침의 목적)

- 본 지구단위계획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의해 작성되는 향촌2 일반산업단지계획구역내 지구단위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및 건축물의 용도·규모·배치·형태와 공간활동 등에 관한 시행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침의 적용범위)

- 본 지침은 향촌2 일반산업단지계획구역 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리)

- ① 본 지침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는 일단의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2. “용적률”이라 함은 건축법 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상부 건축물 연면적(동일대지에 2개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3. “허용용도”라 함은 그 필지에서 건축 가능한 용도를 말하며, 허용용도가 지정된 필지에서는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로는 건축할 수 없다.
 4. “불허용도”라 함은 관련법규에서 허용된다 하더라도 해당 필지에는 허용되지 않은 건축용도를 말하며, 지정용도와 불허용도가 중복될 경우 불허용도가 우선적으로 적용 된다.
 5. “최고층수”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 이하로 건축되어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52호

6. “주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적 중 유리창 면적을 제외한 벽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색깔을 말한다.
 7. “보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적 중 유리창 면적을 제외한 벽면적의 10% 이상, 30% 미만을 차지하는 색깔을 말한다.
 8. “강조색”이라 함은 건축의 의장효과를 위하여 사용되는 색깔로서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적 중 유리창 면적을 제외한 벽면적의 10% 미만을 차지하는 색깔을 말한다.
- ② 본 지침에서의 층수의 산정은 건축법상의 규정을 따른다.
- ③ 이 지침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로서 각종 법규에 정의된 용어는 그에 따르며 기타용어는 관습적인 의미로 해석한다.

제2장 산업시설용지

제1조(건축물의 용도)

○ 산업시설용지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예시)에 의한다.

- 예시

구분	규제내용
산업시설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공장 부대시설에 한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사 천 시 공 보

제652호

제2조(건축물의 밀도 및 높이)

① 도면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용적률 이하	최고층수	250%이하	-
건폐율 이하	최저층수	60%이하	-

② 산업시설용지의 건폐율은 60%이하, 용적률은 250%이하로 적용한다.

제3조(건축물의 색채)

①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계통 · 원색과 가까운 색 금지 ·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 주조색이 없고 보조색이 여러 가지 존재할 경우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한없음

제4조(차량의 대지 내 진·출입)

- ① 경관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된 곳에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단, 비상용 차량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② 도로에서 각 대지의 주차장으로 직접 주차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도의 대지 내의 주차통로를 통해 주차하여야 한다.
- ③ 대지로의 차량 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주차장)

- 산업시설용지 내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따른다.

사 천 시 공 보

제 652 호

제3장 기타 기반시설용지

제1조(주차장의 설치)

- ① 주차장 부지 내에 주차전용 건축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주차장법」 및 「사천시 주차장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2조(소공원의 설치)

- ① 소공원의 공원시설은 전체부지의 20%이하로 설치토록 한다.
- ② 소공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완충녹지 및 경관녹지의 설치)

- ① 완충녹지 및 경관녹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건축물의 배치)

- 기반시설용지 부지에 당해 용도를 위한 건축물을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는 인접한 대지에 있는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5조(기타 기반시설의 적용)

- 기타 기반시설용지의 적용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4장 기타사항

제1조(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 ① 1개 공장에서 설치할 수 있는 간판의 수는 2개 이내로 제한한다.
- ② 기타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설치방법은 옥외광고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사천시 조례에 따른다.

제2조(기타)

- ① 옥상에 설치되는 물탱크 중 기성제품은 노출시켜서는 안된다.

사 천 시 공 보

제652호

제5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제1조(지구단위계획 지침의 적용범위)

-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행하는 모든 건축물 및 공공시설의 건축과 조성 행위에 적용된다.

제2조(지구단위계획의 변경)

-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해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변경절차를 따른다.
- ② 본 지침 시행이후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개정된 내용이 본 지침과 상이한 경우 개정된 관계법령의 내용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 별도의 변경 절차 없이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